

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
번호

501

제출연월일 : 2002년 월 일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우리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수림내 입목의 우리도 지분 수익 분배금을 적립금으로 운영하여, 공유림 확대조성 및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분수림설정 수익금의 적립규정 신설(제35조의2제2항)
 - 분수림의 수익으로 분배된 수입금은 공유림을 확대조성할 수 있는 자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함.

4. 의안전문 : 별 첨

5. 신구조문 대비표 : 별 첨

6. 관계법령 발췌 : 별 첨

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5조의2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,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분수림의 수익으로 분배된 수입금은 공유림을 확대조성할 수 있는 자금으로 적립하여 관리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5조의2(분수립 설정) 영 제102조의2규정에 의한 분수립의 설정에 관하여는 산림법령상의 분수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margin-top: 20px;"><u>< 신 설 ></u></p>	<p>제35조의2(분수립 설정) ① - - - ----- ----- -----</p> <p style="margin-top: 20px;">②분수립의 수익으로 분배된 수입금은 공유림을 확대조성할 수 있는 자금으로 적립하여 관리할 수 있다.</p>

관계법령 발췌

□ 지방재정법시행령

제83조의2 (재산매각대금의 용도 등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02조의2(분수립 설정)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립을 목적으로 공유림에 분수립을 설정하여 당해 분수림에서 생긴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와 조립자 사이에 이를 분배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수림의 설정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